

資料

FOC(Foreign) Policy의 火災保險 普通約款에 관한 考察

趙 哲 佑
<本協會 業務部・課長>

우리나라는 國內에서 認可를 得한 國文火災保險約款을 使用하고 있었으나 急進의 經濟成長과 발맞추어 外國借款導入이 頻繁하였으며 借款條件에는 대부분 借款 提供者가 要求하는 英文約款을 使用토록 規定되어 이에 대한 保險을 誘致할 수 없음에 따라 借款을 提供하는 國家의 保險會社에 加入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政府에서는 國內 保險業界의 育成方案과 外貨獲得 流出防止를 위하여 國內에서도 英文約款을 使用토록 制度의 으로 補完하고 外資導入에 隨伴한 保險契約을 國內保險會社에 付保토록 外資導入借款 契約書에 明示도록 합에 따라 1968年 8月 20日 財務部 認可에 의하여 英文約款을 使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認可되어 使用하는 英文火災保險約款은 英國의 FOC Foreign에서 制定한 統一約款(Uniform Policy)과 美國 뉴욕州 火災保險約款(Standard Fire Insurance Policy of the State of New York)을 使用하고 있다.

FOC Foreign의 統一約款은 英國의 火災保險委員會에서 1904年 4月 12日 처음으로 制定한 Uniform Policy Condition이 1909年과 1933年 두차례에 걸쳐改正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려한 FOC Foreign約款은 英國國內에서만 使用하는 Standard Fire Policy와 英國國內以外의 國外에서 使用되는 Fire Offices Committee, Foreign을 構成하여 作成한 Uniform Policy를 制定하여 使用하고 있다.

本考에서는 우리나라에서 認可를 得하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英國의 海外用인 Fire Offices Committee,

Foreign Policy(以下 FOC, F約款이라 한다)의 普通保險約款에 대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1. 告知義務(Misdescription)

〈第1條〉 保險의 目的 또는 이를 收容하는 建物이나 場所에 關하여 重要한 不實의 記載가 있든지 또는 危險測定에 關係되는 重要한 事實을 告知한 때에는 그러한 不實記載 不告知 또는 不實告知에 關係되는 保險의 目的에 對하여는 當會社는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한다.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告知義務를 賦課시켰으며 그 義務違背時には 保險者가 契約을 解止하거나 免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告知하여야 할 事項」(Material Facts)은 國文約款에 선 保險請約書上의 記載事項이라고 明示하였으나 FOC F約款에는 「危險測定上 知아야 할」(to be known for estimating the risk)것으로만 하였을뿐 具體的인 明示規程이 없다.

英國의 判例는 Material Facts를 다음과 같이 看做하였다.

가. 火災保險이 正常以上임을 示唆하는 情報(例: 초가집, 危險職種, 建物內에 貯藏된 危險品目)

나. 道德危險에 關聯된 內容, 過去의 火災經歷과 他保險者가 更新契約을 引受하였는지 拒否하였는지의 與否는 請約者가 이를 告知하여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請約者의 姓名 및 國籍도 告知事項이 될 수 있음.

다. 保險者 責任이 正常보다 增大될 수 있는 事實

(例：事務室內 相當數量의 原稿를 一般品目과 함께 付保하려는 경우)

라. 請約書上の 質問事項으로 設定되어 重要하다고 表示된 事項에 關한 情報(例：請約者の 前駁經歷)

또한 告知義務違背의 效果로는 國文約款은 契約의 解止인 反面 FOC F約款은 保險契約은 그대로 有效하게 存續시키고 但只 補償責任을 지지 않거나 保險金請求權이 喪失되는 것으로 하였다.

2. 領受證(Receipts)

〈第2條〉 當會社의 職員 또는 正當하게 選任된 當會社의 代理人의 署名이 있는 印刷된 領收證이 保險契約書에 交付됨으로써 當會社에 保險料가 支給된 것으로 본다.

雙務契約인 保險契約에서는 保險會社가 損害補償을 約束한 以上 保險會社는 保險契約期間이 開始됨과 同時に 保險責任開始에 對備하고 있지만 保險契約者가 保險料를 納入하지 아니할 때에는 保險會社의 保險責任은 지지 아니한다.

즉 保險期間이 開始되어도 保險料領收前에는 保險者의 補償責任이 없다. FOC F約款에 按 保險證券序文에 「이 保險證券은 ○○(以下 保險契約者라 稱함)가 一金 ○○整을 …條로 ○○保險會社(以下 當會社라 稱함)에게 納入하였음을 證明함」라고 規制하여 保險證券 그 自體가 保險料의 納入을 證明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保險證券의 發給 以前에 正當하게 委任을 받지 않은 者가 保險料를 收納하였을 경우 같은 때에는 問題가 생기므로 이 條項을 規制해 둔 것이다.

3. 他保險會社와의 保險契約

〈第3條〉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は 이 保險의 目的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 一個 또는 數個의 다른 保險契約을 이미 締結하였거나 將次 締結한 境遇에는 이를 當會社에 通知하여야 한다. 만약 損失 또는 損害가 發生하기 前에 그러한 保險事項이 當會社 또는 當保險의 代理人에 通知되어 이 證券上에 記載되거나 背書되지 않으면 被保險者は 이 證券上의 모든 利益을 喪失한다.

火災保險을 다른 保險會社와 重複契約하였을 경우,

火災保險의 二重契約은 超過保險을 構成하며 그 結果道德的 危險(moral hazard)을 發生 助長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의 弊害를 除去하는 意味에서도 本條項을 必要로 하였다. 이는 國文約款의 通知義務에도 同一한 條項이 있다.

4. 倒壞條項(Fallen Buildings)

〈第4條〉 a. 建物 또는 그 一部 b. 連鎖建物의 全部 또는 그 一部나 그 建物을 構成하는 構造物이 倒壞 또는 頽覆되었을 때에는 ① 그 建物 또는 그 建物의 一部 ② 그 建物에 收容된 모든 保險의 目的 ③ 그 建物 또는 그 建物에 收容된 모든 保險의 目的에 대하거나 關聯이 있는 賃借에 관한

이 保險證券上의 保險契約은 即時 그 効力を 喪失함. 다만, 그 倒壞 또는 頽覆이, 그 建物의 全體 또는 中心部이거나 重要한 部分에 亘했을 때, 또는 그 建物 또는 그 一部의 用途를 害치거나 또는 그 建物이나 그 一部 또는 거기에 收容된 保險의 目的이 增大한 火災危險에 直面하게 되었을 때 또는 그밖의 重大한 경우에 限함:

또한, 그 倒壞 또는 頽覆이 이 保險證券에 의해 擔保되거나 萬若 그 建物·連鎖建物 또는 構造物이 保險契約에 付保되었다면 擔保되지 않았을 경우에 限함.

모든 訴訟에 있어서 倒壞 또는 頽覆이 上記 火災로 인한 것임을 舉證하는 責任은 保險被者에게 있음.

이 倒壞建物條項은 國文約款이나 FOC約款에는 없으나 다만 FOC F約款에서만 使用하고 있는 條項이다.

付保建物이 地震 또는 颶風으로 인해 倒壞되었을 때에는 그 倒壞의 直接結果로서 火災가 發生되지 않더라도 火災危險에 대한 危險度(Exposure)가 顯著하게 增大되며 마련이다. 즉 제 아무리 防火施設이 完備된 建物이라도 그것이 倒壞된다면 防火 또는 防火施設이 破損되어 그 機能을 喪失하게 되므로 火災危險度가 增大되는 것이다. 무릇 火災保險契約을 引受할 때에는 危險測定結果 引受當時의 狀態下에 있는 保險의 目的을 約定期間동안 擔保한다는 것이지 引受當時에 比해 危險度가 判異하게 增大되었을 때까지도 이를 擔保하여야 한 義務는 保險者에게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設令追加保險料를 納入한다 하여도 倒壞된 建物이나 거기

에 수용된 機械 動產같은 것을 損保한다는 것은 保險技術上 不可能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不得己 倒壊된 時點부터 保險契約의 效力を 衰失시킬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本條項은 建物뿐만 아니라 其他 物件(property)도 包含되도록 細心한 注意가 기울여져 있고 전세(rent)도 또한 保險에 들 수 있으므로 本條項은 이 경우도 適用되도록 된 것이다.

FOC F約款은 倒壊에 따른 例外規程으로 建物自體가 倒壊된 것이 아니거나 建物一部의 輕微한 倒壊의 경우는 保險契約을 繼續 有效하도록 規制하였고, 火災나 減失의 結果로서 建物이 倒壊되었을 때에는 保險契約이 存續된다는 것이다.

또한 注意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倒壊 또는 顛覆이 火災에 基因하였음을 證明하는 舉證責任은 被保險者에게 있다. 즉, 正當한 保險金 支給請求의 立證責任은 被保險者가 지게 되는 것이다.

5. 補償하지 않는 損害(a)

〈第5條〉 이 保險契約은 下記事項을 補償하지 아니한다.

- (a) 火災中 또는 火災後의 盜難에 의한 損害
- (b) 保險의 目的의 自然釀酵, 自然發熱 또는 自然發火(第7條(f)에 規定된 것은 除外)나 加熱 또는 乾燥作用을 받음으로써 생긴 損失 또는 損害
- (c) 아래 事項으로 인하거나 그 發生中 또는 그 結果 發生된 損失 또는 損害 (1) 官公署 命令에 의한 保險의 目的의 燃燒 (2) 地下의 火災

(1) 盜難으로 인한 損害는 保險者 免責으로 하였다. 또한 FOC F約款에선 火災의 發生中(during the occurrence) 또는 發生後(after the occurrence)라고 盜難危險이 損保되는 時期를 明確하게 規制하여 좋았다. 反面 紛失危險에 대하여는 國文約款과는 달리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火災發生時 盜難이나 紛失이 를 区分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盜難만을 免責시킨 것은 紛爭을誘發하기 쉽다.

(2) ① 自然釀酵: 釀造場에 있어서는 物件과 物件의 接觸 혹은 混藏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가리지 않고 이를 인해 생긴 損害에 대하여 保險會社는 免責이 된다. 釀酵에 의하여 火災가 發生하지 않는 限 釀酵物의 自

然熱, 가스등에 의한 損害는 물론 그 周圍의 目的物의 損害에 대하여도 保險會社는 免責이 된다.

② 自然發熱: 保險의 目的인 物件의 性質에 따라서는 自然發熱이 생긴다. 즉 石炭의 경우는 一定의 溫氣와 熱이 합칠 때에는 스스로 發熱한다. 그 結果 品質이 變하는 損害를 입는다. 이런 것들은 物件에 따라 性質에서 發生하는 것이므로 保險會社는 補償하지 아니한다.

③ 自然發火: 貨物이 特別한 偶然의 事故로 인하지 아니하고 自然히 化學變化를 일으켜 熱을 發生하여 發火케 되는 것을 自然發火라고 한다. 石炭, 魚粉, 어떤種類의 藥品, 大麻 등에 이와 같은 例를 볼 수 있다.

이와같이 保險의 目的의 固有의 性質에 기인하는 自然發生의 危險에 대하여 保險者는 免責되나, 다른 貨物의 自然發火에 起因하여 燃燒된 경우에는 免責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石炭의 경우에는 國文約款에선 石炭의 自然發火擔保特別約款을 特約으로 添附하여 擔保하나 FOC, F約款에선 本證券에 明記하는 경우에는 이를 擔保하고 있는 점이 重要하다.

(3) 官公署의 命令에 의하여 物件을 消盡할 경우의 捐賄의 除外條項은 1909年 約款改正時 包含된 條項으로 이는 당시 「호놀루루」의 衛生 「퀸폐인」에서當局은 매우 不潔한 都市의 特定地域에 대하여 불을 질렀고 불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擴大되어 當初에는 消盡할 계획이 없었던 各種 貴重한 物件이 破損되었고 따라서 그 當時 保險會社는 그들 證券에 免責條項이 없으므로 支給해야만 했었다. 이러한 事件後 그의 必要性을 느끼고 挿入한 條項이다.

(4) 地下火災한 地形을 形成할 때 각종 연소성이 있는 物質들이 끓어 오르는 것 또는 地表面에 도달할 때 火災를 일으키는 이탄성토질(peaty soil)의 自熱(self heating)現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現象에 의한 損害를 免責으로 規程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地質學上 이러한 危險은 거의 없다. 다만 이 免責條項을 鎳山危險(Mining Risks)에서와 같이 땅밀에 發生한 財產의 火災까지 擴大 適用하여서는 안된다.

6. 補償하지 않는 損害(b)

〈第6條〉 이 保險은 矢接 간접 또는 近因遠因을

不問하고 다음 事項에 基因 또는 關聯하여 생긴 損害에 대하여도 이를 補償하지 아니한다.

(1) 地震, 噴火, 風風, 폭풍, 旋風이나 기타의 自然變象 또는 大氣의 變象

(2) 戰爭, 侵略, 外敵의 행위나 戰爭類似行爲(宣戰布告의 有無를 不問) 暴動, 驅擾反亂, 革命, 陰謀, 軍事力 또는 築奪者의 支配, 戒嚴令이나 嚴戒狀態의 宣布 또는 그 維持를 決定하는 事態 또는 要因 直接·間接 또는 近因 遠因을 不問하고 前記한 事件들에 基因 또는 關聯하여 發生한 異常狀態(實體의 인여부를 불문)가 存在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损失 또는 損害에 대하여는 이를 補償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損害가 前記한 異常狀態와 관계없이 獨立하여 發生하였음을 被保險者が 證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當會社 訴訟節次에 있어서 이 規定을 들어 어떤 損失이나 損害를 이 保險契約에 의하여 補償할 수 없다고 主張하는 경우에 損失 또는 損害가 補償되어야 한다고 立證하는 責任은 被保險者에게 있다.

(1) 地震, 噴火, 風風등 自然의 現象에 의한 損害, 즉 氣象危險(Wather Risks)은 大災害(Catastrophe)를 誘發하기 쉬우므로 損害의 原因의 直接·間接을 不問하고 免責으로 다루웠다. 특히 FOC F約款은 風風으로 인한 損害를 免責으로 하여 風風이 부는 동안 火災가 發生되고 또 그 風力에 의해 火災가 確大되는 경우를 免責처리한 反面 國文約款에는 風風에 의한 不擔保條項이 없으므로 擔保하여야 한다.

(2) 戰爭條項(War clause)으로 戰爭, 暴動 등의 戰爭危險을 그 原因의 直, 間接을 不問하고 免責으로 規定한 것으로 이는 前項과 같이 大災害에 대한 防備責이다.

(3) Wather Risks나 War Risks 뿐만 아니라 이들 異常狀態가 存在하고 있는 동안에 發生되는 損害는 如何한 경우도 被保險者が 免責함을 規制하였는데 이는 異常狀態期間中(during such conditions)에는 直接, 間接, 近因 또는 遠因으로 地震이나 戰爭에 基因하지 않고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버리는 아주 通常의 現象에 의해 火災가 發生될 것이 立證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異常狀態期間中에 發生한 火災에 의한 損失이나 損害는 除外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혼란기간중 火災가 發生할 기회가 많고(特히 放火) 이러한 火災가 消防水의 供給, 消防隊의 鎮火 곤란등으로 더 큰 損害

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保險會社가 保護를 받기 위해 規制한 條項이다.

(4) 다만 異常事態下에서 發生한 損害라도 그것이 異常事態와 無關한 것임을 被保險者が 立證하는 경우는 被保險者が例外적으로 補償하여 준다. 또한 保險會社가 免責을 主張하는 경우의 訴訟에 있어서도 舉證責任은 被保險者에게 있음을 明示하여 놓았다.

7. 明記되지 않으면 擔保되지 않는 危險(Risks not covered unless expressly included)

〈第7條〉 다음의 物件은 證券上에 特別히 記載되지 않으면 이 保險에서 擔保되지 아니한다.

- (a) 信託 또는 委託에 의하여 占有되는 物件
- (b) 金銀塊 또는 박혀 있지 않는 보석
- (c) 價格이 100불을 超過하는 骨董品 또는 미술품
- (d) 稿本, 圖面, 繪畫 또는 圖案, 본, 模型이나 鑄型
- (e) 證券, 證書 또는 各種證書類, 印紙類, 鑄貨, 紙幣, 手票會計 帳簿나 其他의 營業帳簿
- (f) 石炭 그러나 그 自體의 自然發火에 의한 損失 또는 損害에 限침
- (g) 爆發物
- (h) 爆發에 基因하여 또는 그 結果로써 생긴 損失 또는 損害. 그러나 內部에서 가스를 發生하지 않는 建物 또는 가스 製造所의 一部가 아닌 建物內에서 照明 또는 家事用으로 使用하는 가스의 爆發로 인하여 생긴 損失 또는 損害는 이 證券에서 規定하고 있는 火災에 의한 損失로 본다.

(i) 偶發的인 與否를 莫論, 森林, 耕林, 原野, 草原이나 정글의 燃燒 또는 地上物의 除去를 위한 火災에 基因하거나 그 結果로서 생긴 損失 또는 損害

(1) 被保險者와 住居를 같이 하는 사람의 所有物 다른 約定이 없는 한 保險의 目的에 自動의으로 包含되는 것으로 한 國文約款과는 달리 FOC 約款은 保險證券에 明記하지 않는限 住居를 같이 하는 사람의 所有物은 保險의 目的에 包含되지 않는 것이다.

(2) 信託 또는 委託에 의하여 占有하는 物品은 特約이 없으면 擔保하지 않은 것이다. 信託이란 他人所有

物品을 被保險者가 단순한 任置者로서 保管하는 것을 말하며 委任이란 手數料를 받고 委託販賣하기 위하여 被保險者가 他人所有物品을 占有하는 것을 말한다.

保險契約者가 被保險利益의 性質을 告知하거나 이를 保險證券에 明記하는 것은 不必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信託 또는 委任에 의해 被保險者가 占有하고 있는 物品에 대하여는 이 規程과 같이 例外規程을 設定하여 保險證券에 明記하지 않으면 擔保하지 않고 있다.

(3) 石炭自體의 自然燃燒危險을 다루고 있으며 國文約款은 石炭의 自然發火擔保特別約款으로 擔保하고 있으나 FOC F約款은 保險證券에 明記하면 自然燃燒에 대한 石炭을 擔保할 수 있도록 許用하고 있다.

(4) 燃發物 또는 爆發 및 山野의 火災에 대하여는 特約이 없는 限 擔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爆發損害는 國文約款에선 原因의 直接, 間接을 不問하고 모두 免責하고 있다. 다만 爆發의 結果로 發生된 火災損害는 补償을 하는 反面 FOC F約款은 爆發前의 火災損害는 补償하나 爆發로 인하거나 爆發中 또는 爆發後의 結果로 생긴 모든 損失 또는 損害를 免責하고 있고 特約이 없는 한 爆發로 인한 損害는 补償하지 않는다.

FOC F約款但書規程은 建物 構內에서 燈火나 家事用으로 使用된 가스의 爆發은 特約 없이도 擔保할 것을 規制하여 좋았다.

또한 爆發物 및 山林, 原野 등 山野火災에 대하여 國文約款과는 달리 FOC F約款에서는 特約이 없으면 保險의 目的에서 除外시킨 것은 이를 爆發物 및 山野火災가 大災害 危險으로 看做되기 때문이다.

8. 變更과 移轉(Alterations and Removals)

〈第8條〉 다음의 하나에 該當될 增遇에는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は 損失 또는 損害가 発生하기 전에 當會社 또는 그 代理人에 의하여 保險證券上에 그 事實이 背書되지 아니하면 保險의 目的에 대한 保險契約은 效力を 衰失한다.

(a) 從事하는 商業 또는 製造業의 變更이나 保險의 目的인 建物 또는 保險의 目的을 收容하는 建物의 用途나 다른 事情으로 인하여 火災에 의한 損失 또는 損害의 危險이 增加되도록 變更된 경우

(b) 保險의 目的인 建物 또는 保險의 目的을 收容하는 建物을 비어둔 채 30日以上이 經過된 경우

(c) 保險의 目的이 保險證券에 記載된 以外의 建物 또는 場所에 移轉된 경우

(d) 保險의 目的에 關한 權利가 遺言 또는 法律上의 當然한 結果에 의하지 않고 被保險者로 부터 他人에 移轉된 경우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保險契約締結後 保險會社에 通知하여야 할 事項을 明記한 것으로서 通知義務를 保險契約者側에서 違背하였을 때 國文約款은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있으나 FOC F約款은 必히 損害發生前에 履行하여야 하며 通知義務 違背事實 때문에 영향을 입은 物件에 限해 保險契約의 效力이 衰失되는 것으로 規制하였다.

(1) 「위 以內에 危險이 뚜렷이 增加할 경우」의 國文約款 條項이나 FOC F約款의 「다른 事情으로 인하여 火災에 의한 損失 또는 損害의 危險이 增加되도록 變更된 경우」는 包括條項으로 同一한 뜻이므로 「顯著한 危險의 增加는 保險會社 또는 契約者 어느一方의 主觀에 의하지 않고 客觀의 으로 보아 顯著한 危險의 增加를 가리킨다. 契約者の 主觀의 見解로 危險이 顯著한 增加가 아니라고 생각되나 많은 사람의 客觀의 觀察에서 危險이 顯著한 增加로 判定될 경우가 있으므로 危險이 增加가 되는 경우는 顯著한 增加인가의 判斷은 뒤로 미루고 우선 保險會社에 通知하여야 한다.

(2) 建物을 30日以上 비워둘 때는 外部의 侵入者에 의하여 無責任한 火氣使用이나 小兒들의 불장난을豫測하게 되며 監視나 防止할手段이 없게 된다. 이러한 危險으로 부터 保險者가 保護를 받기 위한 條項이다.

그러나 처음 20일과 추후 15일간을 비워둘 때에도 合算해서 適用되는 것인지의 與否에 대하여는 明示規程이 없으나 이는 合算하여 認定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妥當할 것이다.

(3) 保險의 目的의 移轉에는 반드시 危險의 增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危險增加의 경우는勿論 위험 감소의 경우라도 保險會社는 危險의 密集狀況을 考慮하여 保有를 決定함으로 保險의 目的이 移轉된 경우도 반드시 通知義務는 履行되어야 한다.

(4) 保險의 目的을 양도할 경우 會社가 證券의 讓渡를 認定하여 新로운 被保險者에 대한 責任을 引受할 것을 表明하지 않으면 財產의 譲渡와 더불어 證券上의

利益이 같이 譲渡될 수 없다는 것을 確認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는 道德的 危險(moral hazard)問題가 연관되며 새로운 被保險者는 會社가 기꺼이 保險을 認定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自意로 또는 法令에 의한 利害關係者の 移轉에 대하여 會社는 選擇權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9. 海上保險條項(Marine Clause)

〈第9條〉 이 保險은 損失 또는 損害가 發生한 當時에 海上保險證券에 의하여 補償되거나 이 保險이 없었더라면 海上保險證券에 의하여 補償되었을 損失 또는 損害에 대하여는 이를 補償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契約이 없는 境遇에 있어서 支給된 損失 또는 損害額이 海上保險證券에 의하여 支給될 金額을 超過하는 部分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火災로 인한 損失 및 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질 수 있는 現存하는 海上證券이 있는 경우 火災證券은 海上證券에서 支給될 수 있는 金額을 超過한 것 外에는 支給하지 않는다는 火災保險과 海上保險이 重複되었을 때 火災保險에선 海上保險에서 于先 火災損害를 補償하여야 한다는 規制條項이다.

그러나 本文句와 관련하여 海上保險證券에서도 Fire Clause 또는 Other Insurance Clause를 두어 火災保險證券에서 損害를 補償받을 수 있는 損失 및 損害에 대한 責任을 除外한다는 相反되는 條項이 있어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火災保險, 海上保險의 2개 證券에 搞保되는 保險料를 負擔하였을 경우 어느 쪽에서도 火災에 대한 補償을 못받게 되며 매우 不合理한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이러한 競合의 경우의 判例는 없으나 善意의 被保險者를 保護하는 保險의 善意性에 비추어 各保險契約이 均等하게 分擔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10. 保險契約의 解止(Cancellation of the Insurance)

〈第10條〉 이 保險은 保險契約者の 請求에 의하여 언제든지 解止할 수 있다. 이 境遇에 있어서 會社는 이 保險證券의 效力이 繼續하였던 期間에 대하여 保險上의 短期料率을 適用한 保險料를 取得한다. 當

會社는 保險契約者에게 解止의 通告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이 境遇에 있어서 會社는 保險契約者の 請求에 의하여 解止日以後의 未經過期間에 대한 保險料의 比例的 部分을 返回한다.

保險契約者에 의한 任意解止權을 認定하고 있으며 또한 保險會社가 特定한 境遇에만 契約을 解止할 수 있는 制限規程을 두고 있는 國文約款과는 달리 危險의 顯著한 增大와 道德危險의 介在 등과 같이 Underwriting 上 保險契約을 繼續시키기가 困難할 때에는 保險會社가 契約者에게 그 趣旨만 通報하면 언제든지 契約을 解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 未經過期間에 대하여 所定의 保險料를 還給해 주게 되어 있다. 다만 保險者에 의한 任意解約의 경우 「保險料의 比例部分(a ratable proportion of the premium)」이란 것이 日割計算에 의한 比例인지 月割計算에 의한 것인지를 分明치 않으나 ratable proportion이란 解約日字부터 保險契約의 正常의 滿期日까지의 殘餘期日에 該當되는 年間保險料의 比例部分을 意味하므로 保險者의 任意解約의 경우는 日割計算에 의한 保險料를 還給해 주어야 할 것이다.

11. 火災의 發生(Occurrence of a Fire)

〈第11條〉 損失 또는 損害가 發生한 境遇에는 被保險者は 即時 그 事實을 會社에 通知하여야 하며 損失 또는 損害가 發生한 後 15日 以内 또는 會社가 書面으로서 特히 承認한 猶豫期間內에 다음 書類를 會社에 提出하여야 한다.

(a) 損害請求書, 이 請求書에는 事故發生當時의 時價를 考慮하되 어떠한 利益도 包含시키지 않고 算出한 保險의 目的의 各 物件別 또는 各 項目別 損害額과 그 算出明細를 表示하여야 한다.

(b) 다른 保險이 있을 境遇에는 그 明細 會社 또는 그 代理人이 被保險者에게 損害補償請求, 火災의 原因, 損失 또는 損害의 發生狀況, 會社의 責任과 그 補償額에 관한 狀況에 대하여 보다 詳細한 內容, 圖面, 見積書, 帳簿, 證憑書類 送狀 또는 그副本이나 寫本, 證據 또는 其他의 報告를 正當하게 要求한 때에는 被保險者は 언제든지 自己의 費用으로서 이를 作成 또는入手하여 損害補償의

請求 또는 이에 관한事項이 貞實함을 表明하는 誓約書나 其他の 違法의인 書類와 함께 當會社에 提出하여야 한다. 當會社는 本條 所定의 條件이 履行되지 않으면 保險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保險事故가 發生하면 被保險者が 保險者에게 이를 遅帶 없이 通報하여야 하며 必要한 書類를 保險會社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러한義務를 被保險者が 不履行하였을 때는 保險者の 補償責任이 없다는 것을 明白히 하였다. 무릇 損害通知란 것은 保險者が 그通知를 받으므로써 事故現場을 調査하여 正確한 事故原因과 損害額을 가려내어公正한 保險金을 決定하는데 必要 不可缺한 것이다. 船舶保險約款에서도 被保險者が 損害通知를 안했을 때 Penalty로서 損害額에서 15%를 控除한다고 規制하였다. 그러나 國文約款은 被保險者が 損害通知를 안해도 保險金請求權은 喪失되지 않는다.

12. 被害物에 대한 當會社의 權利

〈第12條〉 이 證券에 의하여 捍保된 保險의 目的에 대하여 損失 또는 損害가 發生한 境遇에는 當會社는 다음의 行爲를 할 수 있다.

- (a) 損失 또는 損害가 發生한 建物 또는 構內에 들어가서 이를 占有하든지 占有를 繼續하는 것
- (b) 損失 또는 損害의 發生時 그 建物 또는 構內에 있는 被保險者の 所有物을 占有하든지 引渡를 要求하는 것
- (c) 前記 物件을 占有하여 檢查, 區分, 整理, 移動 또는 이에 準하는 處理를 하는 것
- (d) 利害關係者の 計算으로 前記 物件을 賣却 또는 處分하는 것. 當會社는 本條에 의하여 賦與된 權限을 充て든지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被保險者が 이 保險證券에 의한 損害補償을 請求하지 않겠다는 뜻을 書面으로서 通知하든지 또는 損害補償을 請求하여 最終의in決定을 보거나 이를 撤回한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當會社는 本條 所定의 權利를 行使하든지 行使하려고 行한 行爲로 말미암아 被保險者에 대하여 어떤 責任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損害補償의 請求에 대하여 이 保險證券上에서 主張할 수 있는 權利가 減少되는 것은 아니다. 被保險者 또는 그代理人이 本證券에 의한 當會社의 要求에 不應하거나 當

會社의 權利行使을 妨害한 境遇에는 이 證券下의 모든 利益은 喪失된다. 被保險者는 當會社가 保險의 目的을 占有하는 與否를 不問하고 어떠한 境遇에도 그것을 當會社에 委付할 權限이 없다.

(1) 火災가 發生하면 保險會社나 또는 그가 任命한 檢定會社는 正確한 事故原因과 損害額을 調査하기 위하여 火災現場에 出頭하여 事故의 原因 및 被害物件의 檢査, 選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一時 占有할必要가 있다.

이러한 保險會社의 行爲는 특히 保險會社가 免責을 主張하는 경우에 被保險者로부터 抗辯資料로 逆利用당하기 쉬우므로 FOC F約款에선 위와 같은 仔細規程을 插入하여 그러한 行爲를 保險者が 取하였어도 그 行爲에 由於 保險者の 權利는 何等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自衛策으로 規制하였다.

(2)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 또는 그代理人의 保險會社側의 事故調查를 妨害하였을 때의 保險金請求權이 喪失된다는 規制條項이다.

被保險者等이 損害의 發生事實을 通知하면 保險會社는 事故發生의 原因, 損害의 範圍, 程度 및 種類等을 調査하여 補償與否를 判斷하며 補償할 경우 어느 程度까지 補償하여야 適正한 補償이 되는지 細密한 調査를 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調査를 被保險者등이 正當한 理由없이 妨害를 하여 그目的을 達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被保險者에게 適正한 補償을 할 길이 막히게 되므로 그 責任을 全的으로 被保險者에게 归屬시켜 그 利益을 喪失시키는 것이다.

(3) 保險의 目적이 全部 滅失한 것과 同一時 할 수 있는一定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 被保險者가 그의 保險의 目的에 대한 모든 權利를 保險者에게 委付하고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金額의 전부를 請求할 수 있는 保險委付에 대한 權限을 規制한 條項이다. 國文約款에서는 이에 대한 條項을 保險契約法上 海上保險에서만 適用키로 規制하여 그 必要性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規程이 없다.

13. 失權(Forfeiture)

〈第13條〉 萬若 保險金 請求가, 詐欺와 多少라도 關聯性있게 이루어지거나, 保險金請求를 뒷받침하는 데 虛偽陳述을 하거나 使用하는 경우 또는 被保險者

또는 그代理人이 이 保険契約에 의한 給付를 取得하기 위해 詐欺의 手段 및 計略를 使用하는 경우, 또는 損失 또는 損害가 被保險者の 故意 또는 默認에 의해 發生되었을 경우, 또는 保険金을 請求하여 그 것이 拒絶되고 拒絶後 3個月內 또는 (이 保険證券 第18條에 의한 仲裁가 행해졌을 경우는) 仲裁人 또는 審判人의 判定後 3個月內에 訴訟을 提起하지 않으면, 이 保険證券上の 모든 給付는 衰失됨.

被保險者로서는 保険金 請求權을 衰失하는 경우이고 保險者로서는 約定의 保險事故로 被保險者が 입은 經濟的 損失을 補償하지 않는다고 하는相當히 重要한 條項이다.

保險契約에 있어서는 그 性質上 當事者は 信義誠實의 原則에 基하여 行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保險金의 支給을 해야 할 保險者は 保險事故가 發生한 경우 重大한 利害關係를 갖는 保險金 支給義務者로서의 地位에 서 있다. 따라서 被保險者は 信義誠實에 의한 契約을 하지 않고 信義則에 反한 虛偽 또는 詐欺등에 의한手段으로 保險의 利益을 얻고자 할 때 保險者は 保險金 支給責任을 免하고 被保險者は 保險金의 請求權이 衰失한다. FOC F約款은 保險金支給에 異議가 있을 때 被保險者が 所定期間內에 提訴를 하지 않으면 保險金請求權이 衰失되게 되어 있어 이는 被保險者에게 너무 苛酷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 商法은 保險金請求權은 2年으로 되어 있어 準據法이 規制되어 있지 않은 FOC F約款의 이 失權條項은 紛爭의 우려가 있다.

14. 現物補償(Reinstatement)

〈第14條〉 當會社는 그 選擇에 의하여 損失 또는 損害額을 支給하는 代身으로 毀損 또는 滅失된 保險의 目的의 全部 또는 一部를 原狀復舊 또는 代替할 수 있다. 그러나 當會社는 完全無缺하게 原狀復舊한義務는 없으며 事情이 許諾하는範圍內에서相當하고 充分할 程度로 原狀復舊하면 되고, 또한 어떠한境遇에도 保險의 目的의 損失 또는 損害가 發生한 當時에 있어서의 原狀復舊에 所要될 費用이나 그 保險의 目的에 대하여 當會社가 引受한 金額以上을 支給할義務는 없다. 當會社가 保險의 目的의 原狀復舊 또는 代替를 選擇하였을 때에는 被保險者는 自己

의 費用으로서 設計圖, 見積書, 尺度, 數量書 및 其他 明細書를 作成하여 當會社에 提出하여야 한다.

損害의 補償은 保險約款上 保險金을 通貨로 支給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으나例外적으로 現物에 의한 補償도 할 수 있도록 約定하는 것을 現物補償이라 한다. 保險價額 또는 損害額을 查定하는 데 있어서 保險者와 被保險者が 異見이 생길 경우의 最後手段으로서 現物補償이란 權利를 保險會社가 留保하고 있으나, 現物補償制度는 가장 便利한 價值基準인 價格에 의하지 아니하고, 現物 그 自體의 價值를相互比較해야 하므로 損害의 測定에는 오히려 不便한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똑같은 修理로서 損害前보다 目的物이 좋아져도 本質的으로는 所謂 「新舊交換控除(Deduction of new for old)」를 할 必要도 없다. 물론 現物補償方法을 選擇하여도 保險의 目的의 原狀回復을 圖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므로 원狀態보다도 좋은 狀態로 復元할 必要是 없으며 損害物과 同種, 同程度의 것을 復舊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程度, 损耗하고 있던 保險의 目的이 罷災를 입은 때에는 果然 어느 程度의 現物을 支付하면 좋은지 그 測定에는 어려운 點이 많으므로 保險會社의 立場으로서도 결코 有利한 方法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權利行使는 우리나라나 外國이나 그 例가 없다.

15. 代位權(Subrogation of Rights)

〈第15條〉 損害補償의 前後를 莫論하고 被保險者は 當會社의 費用으로 當會社가 이 保険證券에 따라 損失 또는 損害를 補償함으로서 取得 또는 代位하는 第3者에 대한 모든 權利, 損害賠償 請求權의 行使나 賠償을 받는데 必要한 行爲 및 事項을 하거나 이를 위하여 當會社가 正當하게 要求하는 行爲 및 事項을 하는데 協力 또는 同意하여야 한다.

保險者の 代位權 保全 및 行使에 必要한 被保險者の 補助義務를 規制한 것이다. 즉 被保險者が 保險會社로부터 損害額을 補償받은 後에는 第3者에 대하여 求償措置할 수 없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國文約款에서는 商法의 規程에 따라 保險金을 支給한 後에야 保險者が 代位를 받는데 反해 FOC F約款은 保險金支給前에도 被保險者の 權利를 代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6. 分擔條項(Contribution)

〈第16條〉 保險의 目的에 대하여 損失 또는 損害가 發生되었을 때, 萬若 이 保險의 目的에 대하여 1個 또는 數個의 다른 保險契約이 締結되었을 경우에는 被保險者自身 또는 他人에 의한 契約의 與否를 물지 아니하고 當會社는 그 損失 또는 損害의 比例部分以上을 補償하거나 分擔할 責任이 없다.

重複保險의 경우, 즉 다른 保險契約이 締結되어 있는 경우의 損害額의 分擔方法을 規制하여 놓았다. 그러나 他保險契約의 保險金額과의 合計額이 超過保險이 되어야 한다는 要件은 없으며, 다른 保險契約이 있으면 무조건 그 他保險者와 損害額을 分擔하도록 하였다.

重複保險의 경우의 損害額의 計算方法에 관하여는 「損失 또는 損害의 比例部分」이 保險金額에 의한 分擔인지 保險金에 의한 分擔인지가 不明치 않으나 保險者의 責任은 同一한 付保物件에 대한 全體保險金額總額의 當該保險證券上の 保險金額의 比率에 의한 損害의 比率을 뜻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國文約款과 同一하게 保險金額에 의한 分擔 즉 獨立責任額의 比率에 따라야 한다.

「이 보험의 目的에 대하여 1個 또는 數個의 다른 保險契約」의 保險의 目的이란 Physical Property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付保物件의 被保險利益(Interest in the Property)을 意味한다는 것을 注目하여야 한다.

17. 按分條項(Average Policies)

〈第17條〉 火災가 發生한當時에 있어서 保險의 目的의 總價額이 保險金額을 超過한境遇에는 被保險者は 그 超過額에 대하여 그自身이 保險者로 看做되고 損害의 比例的部分을 分擔하여야 한다. 이 保險證券에 의한 目的이 2個以上일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이 條項을 適用한다.

一部保險인 경우 保險金額에 대한 保險價額의 比率로 損害額을 比例補償한다고 規制하였다. 다만 比例補償을 保險의 目的인 각個別(Item)에 適用시킬 것을 別度로 敷衍하여 놓았다.

18. 仲裁條項(Arbitration)

〈第18條〉 損失 또는 損害額에 관하여 異議가 생겼을 때에는 그 分爭은一切의 다른 問題와 分離하여 當事者雙方이 書面으로서 신정하는 1名의 仲裁人の 決定에 따른다. 만약 兩當事者가 單一仲裁人の 選定에 意見이 一致하지 않으면 當事者一方이 書面으로 要請한 後 2月以內에 各當事者가 各己書面으로 選定하는 2名의 利害關係없는 仲裁人の 決定에 따른다. 當事者一方이 仲裁人の 選定을 要請하는 書面通知를 받은 後 2月以內에 仲裁人の 選定을 拒絶하거나 仲裁人을 選定하지 못한境遇에는 다른當事者는 單獨仲裁人을 選定할 수 있다. 仲裁人間에 意見이 一致하지 않을 때에는 그 異議는 審議에 들어가기 앞서 仲裁人이 書面으로서 選定하는 審判人の 決定에 따른다.

審判人은 仲裁人과 같이 審議하여 그 會議의長이 된다. 當事者の 死亡은 仲裁人 또는 審判人の 權限을 抹消하든지 또는 이에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 仲裁人이나 審判人이 死亡한境遇에는 그 死亡한 仲裁人 또는 審判人을 選定한當事者나 仲裁人은 그 後任者를 選定하여야 한다. 仲裁 및 審判의 費用은 審判을 한 仲裁人團 또는 審判人の 裁量에 의하여 決定된다. 損害額에 대하여 紛爭이 있을境遇에 먼저 仲裁人 또는 審判人の 判斷을 받는 것은 本保險證券上에 있어서 訴權取得 또는 訟訴提起의前提條件임을 이에 明文으로 规定한다.

仲裁의 目的이 私法上의 紛爭을 法院의 判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仲裁人の 判定에 의한 圓滿하고 迅速히 解決하는데 있을진데 保險契約과 같이 信義誠實에 의한 契約인 경우는 不幸히 契約當事者間에 紛爭이 생기는 경우 이를 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解決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保險金, 保險契約上의 問題에 따른 契約當事者 사이의 紛爭의 경우에는 通常當事者가 각각 1人씩 選定한 2人의 仲裁人の 判定을 받으며 萬若 仲裁人間에 意見一致가 안되는 경우는 그 仲裁人이 合意해서 選定한 審判人の 判定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世界各國의 共通의慣例이다.

FOC F約款도 역시 이와 同一한 内容으로 規制되어 있다. 다만 仲裁에 回付할 수 있는 紛爭의範圍는 损

害額이나 補償額에 局限되어 있다.

FOC F約款 第18條 末尾에는 被保險者가 訴를 提起하기 前에 于先의으로 仲裁의 判定을 받는것이 停止條件(Condition Precedent)으로 되어 있다. 英法上의 停止條件은 解除條件(Condition Subsequent)보다 더욱더 嚴格하여 契約者가 이를 復行안하면 그 契約은 效力を 發生할 수 없으며 그려므로 提訴權도 剝奪당하게 된다.

19. 會社의 補償責任의 終期

〈第19條〉 어떠한 境遇에 있어서도 損失 또는 損害가 發生한 때로부터 12月이 經過한 뒤에는 當會社는 損失 또는 損害를 補償하는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損害補償의 請求가 仲裁中이거나 訴訟에 繫留中에 있을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被保險者와 保險者 間에 紛爭이 생겨 그것이 仲裁 또는 法院에서 繫留中이 아닌 保險事故 發生後 1年을 保險者의 補償責任에 대한 時限으로 定하고 있는

데 이에 반해 우리 商法은 被保險者의 保險金請求權의 時效를 2年으로 適用하고 있어 準據法이 規制되지 않은 FOC F約款의 이 條項도 紛爭의 우려가 있다.

20. 通 知(Notice)

〈第20條〉 이 約款에 의하여 要求되는 當會社에의 모든 通知와 其他의 通信은 書面으로서 行하여야 한다. 위의 證據로서 當會社는 이 證券을 作成認證한다. 그러나 이 證券은 當社의 正當한 代表者에 의하여 署名되지 않으면 效力이 發生하지 아니한다.

保險契約이 諸成契約이므로 保險請約이나 그 引受行為 또는 罷災通知 痘지어는 告知 또는 通知事項에 관한 通知까지도 口頭 또는 電話로 하면 足하다고 생각되며, 그려한 경우는 특히 告知 및 通知義務履行與否에 대하여 保險契約者와 保險者 사이에 紛爭이 생기므로 이러한 紛爭의 所地를 미연에 防止하기 위하여 規制한 條項이다. *

(사) (지) (식)

제 5 세대 컴퓨터

人工知能을 갖고 있어 인간에 가까운 判斷능력을 가진 컴퓨터.

컴퓨터는 사용하는 素子에 의해 구별되는데 제 5 세대 컴퓨터는 美國 MIT工大에서 연구한 인공지능에 최적한 언어를 10년 이상 수록해온 LISP머신과 다중처리기인 NU머신을 결합시켜 만들어진다. 제 1 세대 컴퓨터는 전공판, 제 2 세대는 트랜지스터, 제 3 세대는 IC집적회로, 제 4 세대는 超 LSI를 素子로 사용했다. 종래의 컴퓨터는 예스, 노의 대답밖에는 기대할 수 없으나 제 5 세대 컴퓨터는 제안, 判斷까지 내려 지금까지 것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생각하는 컴퓨터이다.